##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395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1.

발 의 자:김경협·오영환·윤후덕

김홍걸 · 이광재 · 이규민

양이원영•양경숙•이형석

이동주 · 한준호 · 양정숙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·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, 범국민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행정적 지원 및 비용 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비영리법인·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)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0조의2(비영리법인·비영리민간
	단체의 지원) 정부와 지방자치
	단체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
	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
	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
	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
	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
	부를 보조할 수 있다.